

# 2021년도 제1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6. 21.(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4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977건(안전번호 제2021-66496호~67706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66496호~66514호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66515호는 온라인쇼핑몰 내 제품 상세페이지 이미지 무단 이용에 대하여 권리자가 신고한 것으로, 해당 이미지의 합법 시장 존재 여부가 불명확한 점,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권리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94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55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14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의 저작물명, 저작권사, 저작물 관련 정보, 6쪽의 저작권사에 대한 비식별 처리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저작물명, 저작물 정보, 저작권사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66496호~66514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66515호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한 건으로, '○○○○○○'의 제품을 재판매하는 업체가 '○○○○○○'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제품 상세페이지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안임.

제품 상세페이지 이미지는 제품에 대한 설명 및 홍보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제품의 원료, 성분, 효능, 인체적용시험 결과 및 건강기능식품 인증 여부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있음. 민원인은 해당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기 위하여 '■■■■■■■■'에서 제작한 제품 상세페이지의 원본을 제출하였음.

원본 및 심의대상 게시물의 이미지는 일부 색상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이미지로 판단됨.

심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내 판매 페이지에서 제품 광고 사진 또는 제품 관련 이미지 등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사안에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품 판매 게시물 내 사진 이미지가 저작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논의를 한 바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6651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민원인이 저작권 침해보다는 판매 금지를 위해서 제도를 이용한다는 의미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시정권고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 자체이고 저작물을 통해서 통신판매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 B 위원: 부결하자는 입장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음. 첫 번째는 저작물이 유통되는 합법 시장이 존재하는지의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민원인 회사와 판매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알 수도 없고, 저작권보호심의 위원회에서 관여할 수도 없는 것임. 민사적으로 당사자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C 위원: 영업을 위한 저작물이라 제작사와 판매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확실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임.
- A 위원: 그렇다면 영업을 위한 저작물이 아닌, 명백하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사안에 따라 다름. 최근 심의에서는 쇼핑몰 판매를 위해서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미지, 즉 유튜브 영상을 캡처하여 상품 판매를 위해 이용한 사안을 다뤘음. 이 경우에는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의 자유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였음.

- D 위원: 민원인은 상세페이지 전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D 위원: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는 온라인상에서 파급효과가 큰 불법복제물에 대해 신속하게 유통을 막자는 것인데 해당 안전이 과연 그러한 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임.
- A 위원: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권리자에게 권리가 있음이 입증됐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명확한 것이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 부분 또한 명확하지 않음. 민원인은 해당 회사의 직원인데, 해당 회사의 다른 직원이 재판매를 하면서 이미지를 같이 넘겨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음. 또한 해당 상품판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 이상 상품설명을 이용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 A 위원: 행정기관도 조정이나 중재 등 제도가 도입이 되어있는데 개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임.
- B 위원: 저작권 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있음.
- A 위원: 민원인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자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국민신문고 담당자와 논의해서 해당 부분 답변하도록 하겠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66515호는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66516호~67706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주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66523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360포인트에 판매중인 사안으로 가수 동방신기 앨범 모음집을 제공하고 있음.  
(출판 '은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66638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3,000캐시에 판매중인 사안으로 2020년도 학산문화사에서 정식 한국어판으로 출간한 1권부터 77권 전권을 제공하고 있음. 정식 한국어판의 e북은 권당 2,700원에 판매중임.  
(영화 '새콤달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67364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360캐시에 판매중인 사안으로 2021. 6. 4.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임.  
이들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66516호~6770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66516호~67706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66515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66496호~66514호 및 안전번호 제2021-66516호~6770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1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6. 28.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